의 안 번 호

1751

#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교 서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28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28.(금)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5.(화)

#### 2. 제안이유

○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 하고자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총칙(안 제1장)
  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권익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(안 제2장)
  - o 기능(안 제3조)
  -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(안 제4조 ~ 안 제10조)
  - 구민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1조 ~ 안 제17조)
- 다. 고충민원의 처리 등(안 제3장)
  - O 고충민원의 처리(안 제18조)
  - O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(안 제19조)
  - O 국민권익위와의 관계(안 제20조)
- 라. 권익보호관에 대한 협조ㆍ지원(안 제4장)
  - o 사무기구(안 제21조)
  - 운영지원(안 제22조)

4. 근거법규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~ 제52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 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,
- 구민권익위원회를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구민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민주적인 구민 소통정책을 추진하는 자문・심의・ 의결 가능한 위원회로의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32조(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
  - 2.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  - 3.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  - 4.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  - 5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
  - 6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  - 7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
  - 8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워
  - 9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
- 제33조(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)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.
  - 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- 2. 판사 ·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- 3.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- 4.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

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
- 5.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-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
-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
- 제34조(활동비 지원)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) 제15조, 제16조제3항, 제17조, 제18조,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제36조(사무기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.
  -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제37조(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)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.
- 제38조(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)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39조(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) ① 누구든지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권익위원회"라 한다)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수 있다.
  -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
기재하여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.

- 1.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
- 2. 신청의 취지 ·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
- 3.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.
- 1. 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 존 · 비속 또는 형제자매
- 2.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
- 3. 변호사
- 4.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
-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,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·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40조(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)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하다.
- 제41조(고충민원의 조사)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  - 2.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
  - 3.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

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-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조사의 방법)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1.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요구
  - 2.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·신청인·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
  - 3.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·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
  - 4. 감정의 의뢰
  -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 -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3조(고충민원의 이송 등)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4. 16.〉
  - 1.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
  - 2. 국회 · 법원 · 헌법재판소 · 선거관리위원회 · 감사원 ·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
  - 3.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
  - 4. 행정심판, 행정소송,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  - 5. 법령에 따라 화해·알선·조정·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 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  - 6. 판결 · 결정 · 재결 · 화해 · 조정 ·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

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

- 7.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
- 8.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.
-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 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.
- 제44조(합의의 권고)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- 제45조(조정)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.
  -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 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「민법」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.
- 제46조(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 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  -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

- 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·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- 제48조(의견제출 기회의 부여)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 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-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·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 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- 제49조(결정의 통지)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50조(처리결과의 통보 등)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한다.
  -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51조(감사의 의뢰) 고충민원의 조사·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·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,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